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택"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와 기타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대지"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완비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6. "간선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용지 또는 민영주택용지 안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용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7. "복지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시장·의료시설·공동육장·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민주택건설계획 등의 작성시달)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에 따라 매년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주택은행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성) 국민주택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이를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 (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 자금의 조달) 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정부로부터의 차입.
3. 외국자본의 차입.
4.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 (수익금에 한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6조 (국민주택채권) ① 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의 한도액은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에 포함된다.

③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④ 국민주택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되, 매출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매출일로부터 산정하며, 그 이율은 연 8푼이하로 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출기간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전4항 이외에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소환) ①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자의 매입한도와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택복권) ①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 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택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당첨자의 채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 경우에 그 당

첨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운용한다.

제9조 (계정의 설치)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제한) 주택은행에 의하여 조달된 국민주택 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3. 차입금 및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4. 기타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 ① 주택은행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자금의 대출이율·대출기간·상환방법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의 보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마다 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이 특별회계에 소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④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민주택의 규모등) 국민주택의 단위규모, 공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선정방법 및 공급조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공유지의 우선대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대부분을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자에게 이를 대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 대지의 활용)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지의 매각요구를 한 때에는 그 예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예비지 매각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가서 1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제17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용지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토지의 권리자인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 의 제계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 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항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간선시설의 설치요구 등)

① 사업주체는 당해 국민주택에 관한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무 또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간선시설설치권자"라 한다)가 특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그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예산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우선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사업주체의 우선부담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간선시설 설치권자는 그 비용을 사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간선시설설치권자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금의 기준·보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국민주택의 공급절차) 국민주택의 공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분양가격 등) 국민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가임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주자의 관리의무)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가 입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기준)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체납된 가임등의 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촉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한 주택공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수수료로서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에 관한 장기계획
 3.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에 관한 연차 별 계획.
 4. 전 각호에 따른 자금의 조정 및 운용에 관한 계획.
 5.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민영주택에의 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제3항을 제외한다)·제18조·제19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민영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국민주택의 주요 구조부용자재생산업의 면허)

① 국민주택의 주요 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범위와 면허 기준 기타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주택자재의 품질 등) 주택자재의 생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국민주택용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 및 규격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29조 (시범주택의 건설)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주택의 새로운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시공경험이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업자나 기타 전문가로 하여금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각종의 시설, 주택자재의 규격·품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 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 제품의 판매금지, 영

업의 정지, 면허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보고와 검사 등) 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명령) 건설부장관은 주택 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그 생산하는 자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장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자가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택적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그 기업주에게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표준설계도서의 활용) ①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의 표준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에는 건축사법 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보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다른 법과의 관계) ① 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목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를 생산하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3. 제30조·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④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⑤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대통령령제6,518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영주택의 규모)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규모는 100호 이상으로 한다.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한다.

제3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통신시설
2. 보안등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조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

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2.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승인)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이 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할 금액과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 형식) 국민주택채권은 무기표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매출일을 발행일로

하며, 상환일은 그 상환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 해당일로 한다.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주택은행은 행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발행일.

제9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공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총액 및 매출기간과 제8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참가대입) ①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이하 “첨가매입”이라 한다)하여야 할 자와 그 첨가매입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첨가매입을 하여야 할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첨가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의 첨가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 상황) 국민주택채권은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매입한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철회되거나, 등기 또는 등록신청이 기각·반려·각하 또는 철회된 때에는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나 등기 또는 등록사무를 취급한 기관의 장의 증명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제12조 (국민주택채권의 등기) ① 주택은행은 매년 당해년도의 채권발행총액 및 제8조 제3호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역년에 따라 1년분을 본점 소재지에서는 30일 이내에, 지점 및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50일 이내에 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등기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제13조 (등기소) ① 국민주택채권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택은행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 1개의 관할등기소가 주택은행본점 또는 수개의 지점이나 출장소를 관할할 경우에는 그중본점이나 1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가 일괄하여 등기한다.

제14조 (국민주택 채권원부의 비치) 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② 제1항의 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본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계산 및 지급)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연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16조 (국민주택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재무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기타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1조·제12조제5호다서·제13조·제28조·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람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을 말한다.

②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공급사이의 시차에 의하여 생기는 일시적인 여유자금은 주택은행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국민주택의 규모)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2. 연립주택: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3. 아파트: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②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연립주택”이라 함은 2세대 이상이 동일한 건물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2층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제1항제3호의 “아파트”라 함은 2세대 이상이 동일한 건물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3층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제20조 (국민주택공급대상자의 범위등) ① 국민주택의 건설·공급대상 및 그 순위·지원조건등은 매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자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1조 (국민주택공급조건) ① 국민주택에 입

주할 입주자의 선정은 공모에 의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의 입주금·임대보증금 및 월세액과 유지관리비·제해보험료·연체금 기타 입주자로 부서의 징수금 등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주체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건설계획서(대지만을 조성공급하고 자 할 때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도.
3. 국민주택의 설계도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3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 규모는 입주자의 생활상 불편이 없는 것으로 하되 그 종류와 규모의 세부적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요구 등) ① 사업주체가 100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그 건설을 위하여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 간선시설설치권자(이하 “간선시설설치권자”라 한다)는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단지에 이르는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간선시설설치권자에게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선시설설치권자가 제정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사착공일 10일전까지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사업주체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의 우선부담으로 당해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의 설치비보상)

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설치비의 보상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그의 우선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가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는 보상계약의 내용

에 따라 당해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 기타 요금을 징수하여 보상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간선시설설치권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기준) ①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방법.
2. 임대주택의 입주금 및 임대료의 산정방법.
3. 입주자가 그 용도의 변경이나 개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의 절차.
4. 입주자가 당해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의 절차.
5.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방법.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관리규정을 정한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채납금징수위탁)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채납금에 대한 징수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채납자·채납금액·징수기간 등 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9조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생산업의 면허)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이하 "주택자재"라 한다)의 생산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신청등) ①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면허를 받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재산.
6. 시설 및 장비.
7. 정관(법인에 한함)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면허수수료로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면허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제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취소당한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에 있어서 그 임원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주택자재의 품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목은 벽돌·블록·피시(P. C)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4조 (시범주택의 건설)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새로운 주요 구조부용 자재생산업자나 특수한 주택건설공법 소지자에게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감리자 또는 임회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검사기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의 검사를 행할 자는 국립건설연구소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 (기업자의 국민주택건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자의 종업원수는 10인이상으로 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 위임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주택채권참가매입대상자와 참가매입기준

1. 참가매입대상자

참가매입 대상자는 별지부표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는 예외로 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정부관리기업체.
- 라. 금융기관.

2. 참가매입금액

참가매입금액은 별지부표의 금액과 같다.

3. 참가매입의 일부 면제등

가.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수산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어업자금의 융자금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용자에 필요한 저당권설정 등기시의 참가매입을 면제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농민.
-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어민.

나.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재무부 장관이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기한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1) 외국인.
-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를 받는 법인.
- (4)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 (5)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채를 도입한 차관기업체.
- (6) 언론기관.
- (7)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용 시설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다. 동일한 내용의 면허 또는 허가나 인가등에 중복으로 참가 매입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매입액만의 국민주택채권을 참가 매입하게 한다.

다만, 낮은 기준매입액을 먼저 참가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기준매입액과의 차액만을 추가하여 참가 매입하게 한다.

4. 참가매입의 최저금액 및 단위

국민주택채권의 참가매입금액의 최저금액은 1천원으로 하고 참가매입 금액에 1천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계산한다.

5. 국민주택채권 첨가매입필증의 청구등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주택채권의 첨가매입대상이 되는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국민주택채

권을 첨가 매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국민주택 채권의 매출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1

회에 한하여 발행한다. 다만, 분실·도난·소실등의 사유로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은 당해 국민 주택채권매입필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미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발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및금액표

첨 가 매 입 대 상	단위 : 원 첨가매입금액
1. 귀금속점포 영업허가	100,000
2. 업종 소지자 허가	30,000
3. 사행행위 허가	
가. 복표발행(현상포함)	500,000
나. 스크트머신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300,000
다. 카지노	3,000,000
4. 주류판매업허가(도매업)	100,000
5. 주류제조업 면허	300,000
6. 수렵면허	
가. 갑종면허	5,000
나. 을종면허	100,000
7. 특정외래품 판매업 허가	50,000
8. 건축허가	
가. 철근 및 철골조	
(1) 주택용(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0
(2) 주택산업비용(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2,000
(3) 상업 및 서비스(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3,000
나. 연와와 석조	
(1) 주택용(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2) 주택산업비용(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3) 상업 및 서비스(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2,000
다. 시멘트벽돌 부력조	
(1) 주택용(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2) 주택산업비용(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3) 상업서비스(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9. 건설업 면허	
단일업종	150,000
종합업종	300,000
특수업종	500,000
10. 주택자재생산업 면허	100,000
11.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12. 중기신규등록	
1종	10,000
2종	5,000
3종	30,000
13. 식품영업허가	
가. 카바레·나이트클럽·파·싸롱·요리점(요정)	
(1) 서울특별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500,000
(2) 각도청소재지	300,000
(3) 기타 지역	100,000
나. 다과점 영업	
(1) 서울특별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300,000
(2) 각도청소재지	200,000
(3) 기타 지역	100,000
다. 기타 식품영업(간이음식점을 제외한 음식점 영업과 유흥음식점 영업에 한함)	
(1) 서울특별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100,000
(2) 각도청소재지	70,000
(3) 기타 지역	50,000
14. 숙박영업허가	
가. 호텔업	
(1) 서울특별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500,000
(2) 각도청소재지	400,000
(3) 기타 지역	300,000
나. 여관영업	
(1) 서울특별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100,000
(2) 각도청소재지	70,000

(3) 기타 지역	50,000
15. 유기자업 허가	
가. 당구장	
(1) 서울특별시 } 부 산 시 } 대 구 시 } 인 천 시 }	100,000
(2) 각도청소재지	70,000
(3) 기타 지역	50,000
나. 기 원	
(1) 서울특별시 } 부 산 시 } 대 구 시 } 인 천 시 }	30,000
(2) 각도청소재지	20,000
(3) 기타 지역	10,000
다. 골프장	5,000,000
라. 골프연습장	
옥 외	200,000
옥 내	100,000
마. 볼링장	1,000,000
16. 목욕탕업 허가	
가. 욕탕(터키탕, 증기탕 포함)	
(1) 서울특별시 } 부 산 시 } 대 구 시 } 인 천 시 }	1,000,000
(2) 각도청소재지	700,000
(3) 기타 지역	500,000
나. 공중탕(싸우나포함분에 한함)	
(1) 서울특별시 } 부 산 시 } 대 구 시 } 인 천 시 }	500,000
(2) 각도청소재지	400,000
(3) 기타 지역	300,000
17. 전화가설 허가	
가. 9급지이상 자동구역	대당 10,000
나. 6급지이상 8급지 자동구역	대당 5,000
다. 가입전신가입승락(텔레кс)	대당 20,000

18. 부동산 등기		
가. 매매·경락·공매·불하·증여·교환		
(1) 주택		
전물·토지포함한 과세표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액의 10/1,000
전물·토지포함한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20/1,000
전물·토지포함한 과세표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의 30/1,000
(2) 주택이외의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의 20/1,000
나. 상속보존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		과세표준액의 20/1,000
다. 저당권설정 및 이전		
과세표준액이 500만원 이상		과세표준액의 5/1,000

[별표 2]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면허품목

품	목	품	명	비	고
벽	돌	소	성 벽 돌		
블	록	소	성 블 록		
판	재	피	시(P·C)판		
상	판	피	시(P·C)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용자재					

[별표 3] 면 허 기 준

업	종	별	면	허	기	준
1.	점토소성제품(적연와)생산업		(1) 배합 및 토면시설 1식	}	세부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2) 소성시설 1식				
		(3) 기타필요시설				
2.	점토소성 블록제품 생산업		위와 같다.			
3.	피시(P·C)판생산업		(1) 콘크리트제조 및 생산	}	세부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장치 1식				
		(2) 반송시설 1식				
		(3) 증기양생시설 1식				
			(4) 기타 필요시설			

●재무부고시 제555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첨가매입사무취급규정중 개정의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1973년 4월 6일

재무부장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첨가 매입사무취급규정중 개정의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첨가매입 사무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사무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1의 매출점포 이외의 금융기관 점포
에 대하여도 그 매출 및 상환사무를 위탁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은행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1에 의하여 국민주택 채권의
첨가매입 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는 “정부
관리기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
와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
회와 그 회원조합
4.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와 산림
조합 및 산림조합 연합회
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 조
합

6.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마사
회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첨가매입의 일부면제 기준등)

① 영 별표1 제3항나호에 의하여 재무
부장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첨가매입 대상
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면제할 수 있
는 대상자에 대한 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별표1의 별지 부표 제8호의 “건축
허가”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분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197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민주택채권첨가매입일부항목면제기준

매 상 자
(영 별표 1제 3항나호)

1. 외국인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법인

4.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 상 자 의 범 위
국내에서 영업을 종사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1.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
는 등록세감면대상이 되
거나 법인세 비과세법인
2. 자본금의 일부를 정부
가출자 (출연을 포함함
다)하였거나 국고보조를
받고있는 법인

당해년도 현재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
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
자기업

면 제 대 상 항 목
업무용 또는 주거용 건물
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등
기

1.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등록세법등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2.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업
무용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3. 당해 법인의 업무용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
기

1.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등록세법등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2. 당해 법인의 설립 목
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업
무용건물에 대한 건축허
가
3. 당해 법인의 업무용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
기

1.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기업설립에 직접 필요
한 부동산 등기
2. 영업을 개시한 후 인
가된 외국인 투자본의
자본불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면제물받고자하는자가제출
할서류

1. 신청서
2. 비영리 개인 또는 법
인 단체임을 증명하는서
류

3. 기타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좌 각항의 1에 해당하
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정 관
3. 비영리 및 국고보조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정관
3. 외국인 투자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좌 각항의 1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5. 의사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채를 도입한 차관 기업체

의사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자본채 도입계약에 의하여 자본채를 도입한 차관기업체(현금차관 도입기업체는 제외한다)

1. 당해 인가된 자본채 도입에 의하여 건립된 시설(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 등기 또는 당해 시설을 당해 자본채 도입에 수반하여 금융기관에 후취 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5. 기타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정 관
3. 자본채 도입인 가서 사본
4. 과 작항의 1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2.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등록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업론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와 부동산 소유권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6. 언론기관

1. 일간신문사
2. 일간통신사
3. 주간신문사(총행, 오락용 신문을 제외한다.)
4. 월간(순간, 계간을 포함한다)잡지사(총행, 오락 잡지사를 제외한다)
5. 방송국

7. 경제 개발 계획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용 시설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용 시설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
1. 중공업사업, 석유화학공업, 전자공업등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용 시설
 2. 방위산업

1.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
2.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등록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1. 신청서
2. 정 관
3. 사업계획서
4. 감독관청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별표 4]

영별표 1 별지부표 8 항의 "건축허가"시 건축물용도 분류기준

1. 주택용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차고, 별장, 방가로 기타 주거용 건물

2. 주택산업병용

주택사무실병용, 주택점포병용, 기타 주택산업병용 건물

3. 상업 및 서비스

점포, 여관숙박소, 창고, 요리음식점, 육탕, 사무소은행, 체육관, 극장영화관, 시장, 사무실, 사설학원, 병원진료소, 예식장, 유기장, 도살장, 사무실점포, 찻, 요정, 다방, 주점, 주유소, 카바테, 백화점 기타 상업용, 서비스용 또는 상업서비스병용

4. 기 타

기념관, 공장, 도서관, 위험물저장고, 관공서, 학

교, 교회, 광회당, 유치원, 기숙사, 목욕장, 집차장, 선전탑, 보육원, 사찰, 강당, 동물원, 식물원

5. 적용범위

가. 차고의 경우는 주택용건물에 부설될 경우는 주택용으로 분류하여 주택총면적 산출에 포함시키고 기타의 경우는 용도에 따라 적용 분류함.

나. 상가아파트의 경우는 상가의 경우는 상업 및 서비스로 분류하고 아파트는 주택용으로 분류함. 이 경우 면적계산 단위는 상가는 점포당 면적이 되고 아파트는 세대당 면적이 계산단위가 됨.

다. 체육관의 경우 학교에 부설되는 경우는 학교용 건물로서 첨가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각종 도장등은 상업 및 서비스로 분류함.

라. 기타(4항)로 분류된 건축물 허가시는 첨가매입 대상에서 제외됨.